

#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인지도 및 업소별 유해인식도

손애리<sup>†</sup>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 The awareness of “School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Cleanup Zone System” and harmful perception by shops among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in Korea

Aeree Sohn<sup>†</sup>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Sahmyook University

###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status of the awareness of “school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cleanup zone system” and to identify the level of harmful perception by shops. **Methods:** The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method online via the homepage of the education ministry’s student health information center. A total of 293 schools (126 primary schools, 62 middle schools, and 45 high schools) was selected by using a stratified probability sampling. **Results:** Some 32.1% of all subjects knew the law of school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cleanup zone system. The mean of harmful perception was 3.01 (very harmful: 4, harmful: 3, little harmful: 2, no harmful: 1). Regarding the types of high level of harmful perception of shops, adult good shops (3.53), hostess bar (3.52), karaoke bar (3.47), Cigarette vending machines (3.47), Adult only theater (3.47) and Phone sex room (3.37) were high. Singing room (2.29), dance school (2.45), tourist hotel (2.58), comic room (2.59), mini game console (2.66), hotel (2.77), billiard hall (2.81), PC room (2.83) were relatively low in the level of harmful perception. **Conclusions:** National government-level management and supervision will be necessary to prevent adolescent access to harmful shops.

**Key words:** harmful perception, school environment, school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cleanup zone system

## I. 서론

청소년기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므로, 학교 내의 환경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의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오가는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자극하고 충동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이 많은 곳에 노출된 학생들은 비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Kim & Sohn, 2014; Lea, Jee, Lee, Choi, & Jung,

2003; Lee & Nam, 2006; Sohn, 2010).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빠른 산업화로 인해서 학교 주변에 유해환경이 많아짐에 따라 1967년에 ‘학교보건법’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이하 ‘정화구역’)를 도입하여 유해업소를 관리하고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와 유사한 별도의 제도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계획 시 환경담당부서와 사전협의 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해환경을 관리하는 제

Corresponding author : Aeree Sohn

815, Hwarang-ro, Nowon-gu, Seoul, Korea, 01795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Sahmyook University

주소: (01795)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Tel: +82-2-3399-1669, Fax: +82-2-3399-1640, E-mail: aeree@syu.ac.kr

• Received: October 17, 2015

• Revised: December 14, 2015

• Accepted: December 21, 2015

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화구역제도<sup>1)</sup>는 학교를 설립한 이후에 새롭게 진입되는 유해환경만을 관리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 적용범위가 크기 때문에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제대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2008년부터 ‘교육환경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교육환경평가제도는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부터 교육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상대적으로 쾌적한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환경평가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택지개발 시 주거 및 상업용지 등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학교용지를 자투리땅에 배치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선진국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쾌적한 곳에 배치하므로 별개의 법을 정하여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를 관리하는 규정은 찾기 어려우며, 여러 개별 법령에서 학교 주변을 포함시켜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있다(Kim & Sohn, 2014; Sohn, 2010; Sohn & Park, 2013). 예를 들면 일본은 「형법」, 「학교보건법」,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등, 독일은 청소년복지법, 미성년자보호법, 유해도서규제법, 형법 등, 미국은 「청소년보호 및 음란물규제법」에서 유해환경을 규제하고 있다(Sohn & Park, 2013). 정화구역 제도는 정화구역 내에서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기 때문에 영업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Sohn & Park, 2013). 정화구역 제도는 건전한 교육환경의 조성이라는 공공복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이 균형지게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학교 주변에 어떤 영업시설을 어느 정도 규제해야 할지를 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시대변화에 따라 교육환경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유해시설이 등장할 수도 있어서 규제대상이 추가되기도 하고, 반대로 유해업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서 규제에서 제외되는 시설도 있다. 예를 들어 학교 주변의 관광호텔의 건립에 대하여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유해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Sohn & Park, 2013).

학교보건법에서 입지적 제한을 받는 금지행위 및 시설의 유해성은 물리적인 안전성 등의 보건학적 측면뿐만 아

니라 사회적·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규정되어 있다(Kim, 2007; Sohn & Park, 2013). 즉 청소년 유해환경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정되며 어떤 환경의 유해성에 대한 판단은 판단의 주체나 기준, 청소년의 연령, 청소년에게 허용되는 권리의 정도, 사회풍토, 문화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Sohn & Park, 2013)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화구역제도는 인지도가 낮아서 학생, 학부모, 관련 업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사들까지도 알고 있는 비율이 매우 낮다(Kim, 2007). 많은 국민들이 정화구역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주변이라도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업소를 설치해도 된다는 승인을 얻으면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심의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으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잦다(Sohn & Park, 2013). 그러므로 학교 주변에 유해한 교육환경이 범람하는 것을 예방하려면 학교 주변에는 유해행위와 업소를 관리하는 정화구역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또한 어떤 업소가 유해업소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즉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화구역 제도에 어떤 유해시설을 새롭게 추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해야 하는지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화구역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와 유해업소별 유해도를 파악하고, 과거에 비하여 어떻게 달라졌는지 추이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정화구역 제도의 개선방안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이다. 전국을 17개의 시도별로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한 후 학교급별(초·중·고등학교)로 층화하였고,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로 구분하였다. 비례층

1) 정화구역 제도는 학교보건법 제3조에서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 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됨.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 지역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에 명시되고 있는 행위와 시설의 설치가 금지됨.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200m로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금지 행위와 시설의 설치가 가능함.

화추출방법을 이용하여 각 층별로 무작위로 2%를 추출하여 총 233개교(초등학교 126개교, 중학교 62개교, 고등학교 45개교)가 추출되었다. 표본으로 추출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모든 구성원을 전수 조사하였다. 학부모와 교사는 추출된 반의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두 차례의 사전검사(pretest)를 실시하여 설문문항의 가독성이나 오류를 검정하였고,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조사대상 학교의 시도 교육청별로 설문조사 협조요청과 공문을 발송하였다. 조사는 2013년 7월 8일부터 2013년 7월 19일까지 2주에 걸쳐서 수행되었다. 조사방법은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초등학교 3,533부, 중학교 1,961부, 고등학교 1,551부, 학부모 3,097부, 교사 887부로 총 11,029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업소별 유해인식도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0년(이명선 외)과 2010년(한국교육개발원)에 조사된 유해환경 인식과 업소별 유해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본 자료와 비교하였다.

## 2. 조사내용 및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내용으로는 일반사항, 학교 주변 유해환경 인식과 유해시설에 대한 유해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유해시설의 유해인식도는 학교보건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와 시설 중 청소년의 성적호기심, 폭력, 비행이나 범죄 등과 같은 반사회적·반윤리적 행위를 유발하거나 혹은 조장시킬 수 있는 오락·풍속영업과 관련된 금지행위 및 시설 39종으로 하였다. 학교 주변 유해환경 인식으로는 리커트 5점 척도로 4문항을 조사하였다. 업소별 유해도 평가는 2000년(Lee & Sohn, 2000), 2010년(KEDI, 2010) 조사결과 중 동일업종에 대한 조사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라이커트 4점 척도(‘전혀 해롭지 않음-1점부터 매우 해로움-4점’)를 이용하였다(Lee & Sohn, 2000; KEDI, 2010).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tata 12.0과 Prism 5를 사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과 집단별 차이는 카이검정( $\chi^2$ )을 이용하였다. 유해환경업소별 유해인식도가 연도별(2000년, 2010년)연구와 본 연구가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유해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표본수를 이용하여 비모수검정방법인 Kruskal-Wallis 검정을 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전체응답자 11,029명 중 남자는 45.9%, 여자는 54.1%로 나타나 여자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의 경우 남자가 더 많았고, 고등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여자가 더 많았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도시 78.6%, 농촌 21.4%로 도시지역의 응답자가 더 많았다. 학교의 위치가 주택가 주변이라고 한 응답이 6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논밭 주변 18.4%, 기타 7.0%, 공원주변 5.3%, 시장이나 상가주변 4.8%, 유흥가 주변 1.0%의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Table 1>.

## 2. 정화구역제도의 인지도 및 인식도

정화구역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대상의 32.1%가 알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교사가 87.9%, 학부모는 40.4%가 정화구역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학생의 경우는 초등학교생이 27.3%, 중학생이 20.0%, 고등학생이 9.7%로 나타나 초등학교생의 인지도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1$ )<Table 2>.

학교 주변 유해업소가 학생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부모 74.4%, 교사 68.5%로 나타나 학부모나 교사가 학생보다 학교 주변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학생의 경우는 초등학교생이 28.9%, 중학생이 20.9%, 고등학생이 18.1%로 나타나 학년이 낮을수록 학교 주변 유해업소가 학생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유의하게 높았다. ‘우리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많다’에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13.3%, 교사가 10.7%로 학생보다 높았다. 학생의 경우는 초등학교생이 28.9%, 중학생이 20.9%, 고등학생이 18.1%로 학년이 낮을수록 자신의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학교 주변의 환경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은 학부모가 27.0%, 교사는 18.4%였다. 학생의 경우는 고등학생이 30.6%, 중학생이 20.7%, 초등학교생이 17.9%로 학년이 높을수록 자신의 학교 주변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1$ )<Table 2>.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Primary school students (N=3533)		Middle school students (N=1961)		High school students (N=1551)		Parents (N=3097)		Teachers (N=887)		Total (N=11029)		
		N	%	N	%	N	%	N	%	N	%	N	%	
Sex	males	1808	51.2	1139	58.1	699	45.1	878	28.4	533	60.1	5057	45.9	
	females	1725	48.8	822	41.9	852	54.9	2219	71.6	354	39.9	5972	54.1	
Region	urban	2706	76.6	1527	77.9	1307	84.3	2453	79.2	564	63.6	8557	77.6	
	rural	825	23.4	433	22.1	244	15.7	644	20.8	323	36.4	2469	22.4	
School location	residential area	2443	69.1	1096	55.9	732	47.2	2076	67.0	546	61.6	6893	62.5	
	night shop area	11	0.3	19	1.0	47	3.0	22	0.7	9	1.0	108	1.0	
	park area	188	5.3	128	6.5	80	5.2	161	5.2	27	3.0	584	5.3	
	market area	175	5.0	76	3.9	132	8.5	95	3.1	46	5.2	524	4.8	
	factory area	16	.5	39	2.0	8	.5	44	1.4	8	.9	115	1.0	
	agricultural area	553	15.7	408	20.8	328	21.1	535	17.3	208	23.4	2032	18.4	
	others	147	4.2	195	9.9	224	14.4	164	5.3	43	4.8	773	7.0	
	Total		3533	100.0	1961	100.0	1551	100.0	3097	100.0	887	100.0	11029	100.0

<Table 2> The awareness of clean-up zone and the attitudes of school environment

		Primary school students (N=3533)		Middle school students (N=1961)		High school students (N=1551)		Parents (N=3097)		Teachers (N=887)	
		N	%	N	%	N	%	N	%	N	%
Awareness of clean-up zone***											
	know	966	27.3	393	20.0	151	9.7	1252	40.4	780	87.9
	heard	1242	35.2	701	35.7	540	34.8	1056	34.1	57	6.4
	don't know	1325	37.5	867	44.2	860	55.4	789	25.5	50	5.6
Harmful shops around school affect students' behaviors***											
	agree	1020	28.9	409	20.9	280	18.1	2305	74.4	608	68.5
	neutral	639	18.1	482	24.6	375	24.2	319	10.3	69	7.8
	disagree	1874	53.0	1070	54.6	896	57.8	473	15.3	210	23.7
There are many harmful shops around my school***											
	agree	297	8.4	146	7.4	199	12.8	413	13.3	95	10.7
	neutral	683	19.3	422	21.5	354	22.8	689	22.2	96	10.8
	disagree	2553	72.3	1393	71.0	998	64.3	1995	64.4	696	78.5
My school environment needs to be improved***											
	agree	631	17.9	405	20.7	474	30.6	835	27.0	163	18.4
	neutral	946	26.8	643	32.8	482	31.1	950	30.7	153	17.2
	disagree	1956	55.4	913	46.6	595	38.4	1312	42.4	571	64.4

Note: \*\*\*  $p < .001$

#### 4. 정화구역 내 업소별 유해도 평가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유해업소별 유해도 평가는 라이커트 4점 척도로 '전혀 해롭지 않음(1점)부터 매우 해로움(4점)로 구성하였다. 각 업소에 대한 유해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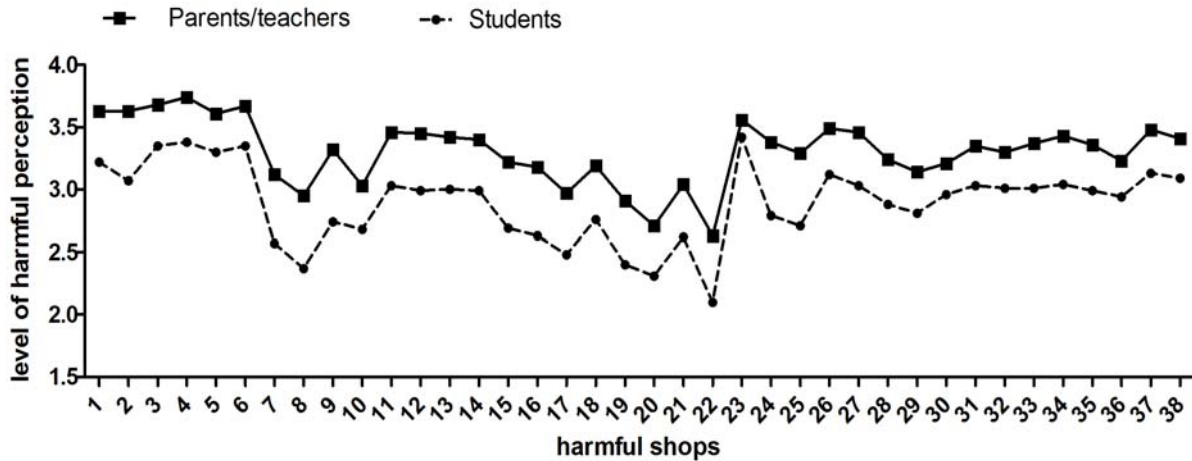
는 집단별 비교와 과거에 조사되었던 선행연구와 비교를 위하여 동일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유해업소별 유해도 평가는 선행연구에서 연속변수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비교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도 연속변수로 가정하였다.

<Table 3> The Level of harmful perception by shops by groups

Unit: Mean

harmful shops	Primary students (N=3533)	Middle students (N=1961)	High students (N=1551)	Total students (N=7045)	Parents (N=3097)	Teachers (N=887)	Parents/ Teachers total (N=3984)	Total (N=11029)
1. Adult only theater <sup>***</sup>	-	3.35	3.05	3.22	3.62	3.69	3.63	3.44
2. Phone/Video sex room <sup>***</sup>	-	3.12	3.00	3.07	3.60	3.71	3.63	3.37
3. Adult goods shop <sup>***</sup>	-	3.45	3.23	3.35	3.67	3.73	3.68	3.53
4. New sex industry shop <sup>***</sup>	-	3.46	3.28	3.38	3.72	3.80	3.74	3.57
5. Karaoke bar <sup>***</sup>	-	3.41	3.17	3.30	3.62	3.58	3.61	3.47
6. Hostess bar <sup>***</sup>	-	3.42	3.25	3.35	3.67	3.66	3.67	3.52
7. Hotel <sup>***</sup>	2.57	2.73	2.37	2.57	3.18	2.93	3.12	2.77
8. Tourist hotel <sup>***</sup>	2.37	2.53	2.18	2.37	2.99	2.77	2.95	2.58
9. Motel/Lodgement <sup>***</sup>	2.75	2.87	2.52	2.74	3.34	3.24	3.32	2.95
10. Billiard hall <sup>***</sup>	2.95	2.63	2.13	2.68	3.11	2.76	3.03	2.81
11. Gambling place <sup>***</sup>	-	3.12	2.92	3.03	3.47	3.44	3.46	3.26
12. Horse race <sup>***</sup>	-	3.05	2.92	2.99	3.47	3.39	3.45	3.24
13. Vehicle race <sup>***</sup>	-	3.08	2.90	3.00	3.44	3.36	3.42	3.22
14. Boat race <sup>***</sup>	-	3.07	2.89	2.99	3.42	3.31	3.40	3.21
15. Game room <sup>***</sup>	3.05	2.46	2.13	2.69	3.21	3.26	3.22	2.88
16. PC room <sup>***</sup>	3.07	2.30	2.04	2.63	3.16	3.25	3.18	2.83
17. Mini game console <sup>***</sup>	2.76	2.35	1.99	2.48	2.97	2.96	2.97	2.66
18. Multi-use game room <sup>***</sup>	3.01	2.68	2.30	2.76	3.19	3.18	3.19	2.92
19. Comic book room <sup>***</sup>	2.57	2.39	2.03	2.40	2.92	2.87	2.91	2.59
20. Dance school <sup>***</sup>	2.30	2.47	2.12	2.31	2.75	2.60	2.71	2.45
21. Dance hall/night club <sup>***</sup>	-	2.73	2.48	2.62	3.06	2.94	3.04	2.84
22. Signing room <sup>***</sup>	2.52	1.80	1.50	2.10	2.66	2.53	2.63	2.29
23. Cigarette vending machines <sup>***</sup>	3.45	3.47	3.26	3.42	3.57	3.52	3.56	3.47
24. Video room <sup>***</sup>	2.87	2.77	2.62	2.79	3.39	3.37	3.38	3.00
25. Video theater <sup>***</sup>	-	2.81	2.58	2.71	3.30	3.25	3.29	3.02
26. Facility over the emission permission/limit criteria <sup>***</sup>	-	3.19	3.03	3.12	3.49	3.47	3.49	3.32
27. Slaughterhouse <sup>***</sup>	-	3.12	2.92	3.03	3.53	3.24	3.46	3.26
28. Cremation facilities <sup>***</sup>	-	3.00	2.73	2.88	3.29	3.03	3.24	3.07
29. Enshrined facilities <sup>**</sup>	-	2.94	2.66	2.81	3.20	2.91	3.14	2.99
30. waste gathering facilities <sup>***</sup>	-	3.07	2.81	2.96	3.27	2.98	3.21	3.09
31. Waste disposal facilities <sup>**</sup>	-	3.13	2.90	3.03	3.39	3.19	3.35	3.20
32. Wastewater terminal treatment facilities <sup>***</sup>	-	3.10	2.90	3.01	3.36	3.12	3.30	3.17
33. Barn <sup>***</sup>	-	3.09	2.91	3.01	3.40	3.25	3.37	3.20
34. Hospital for contagious diseases, isolation quarantine ward <sup>***</sup>	-	3.09	2.97	3.04	3.47	3.30	3.43	3.25
35. Clinic for contagious diseases <sup>**</sup>	-	3.04	2.93	2.99	3.41	3.20	3.36	3.19
36. Livestock market <sup>***</sup>	-	3.01	2.84	2.94	3.30	3.02	3.23	3.10
37. Factory and a storing place of firearms <sup>***</sup>	-	3.21	3.03	3.13	3.53	3.32	3.48	3.32
38. Factory and a storing place of high pressure gas <sup>***</sup>	-	3.16	3.00	3.09	3.47	3.24	3.41	3.26
Total	2.79	2.86	2.61	2.89	3.27	3.13	3.31	3.01

Note: 4 Likert scale(very harmful: 4, harmful: 3, little harmful: 2, no harmful: 1) was used;  
 (-) primary students were not surveyed: <sup>\*\*\*</sup> $p < .001$ (differences between students and parents/teachers.



Note: 1. Adult only theater; 2. Phone/Video sex room; 3. Adult goods shop; 4. New sex industry shop; 5. Karaoke bar; 6. Hostess bar; 7. Hotel; 8. Tourist hotel; 9. Motel/Lodgement; 10. Billiard hall; 11. Gambling place; 12. Horse race; 13. Vehicle race; 14. Boat race; 15. Game room; 16. PC room; 17. Mini game console; 18. Multi-use game room; 19. Comic book room; 20. Dance school; 21. Dance hall/night club; 22. Signing room; 23. Cigarette vending machines; 24. Video room; 25. Video theater; 26. Facility over the emission permission/limit criteria; 27. Slaughterhouse; 28. Cremation facilities; 29. Enshrined facilities; 30. waste gathering facilities; 31. Waste disposal facilities; 32. Wastewater terminal treatment facilities; 34. Hospital for contagious diseases, isolation quarantine ward; 35. Clinic for contagious diseases; 36. Livestock market; 37. Factory and a storing place of firearms; 38. Factory and a storing place of high pressure gas

<Figure 1> The level of harmful perception by shops by students and parents/teachers

유해업소별 유해도 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3.01점(해로움)으로 주변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유해인식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해업소별 유해도 평가점수는 2011년 여성가족부 고시로 청소년보호법에 추가된 신·변종업소(3.57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성인용품점(3.53점), 유흥주점(3.52점), 단란주점(3.47점), 담배자동판매기(3.47점), 성인영화관(3.44점), 전화방/화상대화방(3.37점), 환경기준초과업소(3.32점), 총포화학류 제조소/저장소(3.32점) 등이 높았다. 조사된 38개의 유해업소 중 25개의 유해업소가 해로움에 해당되는 3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유해하다고 인지하였다. 유해도 점수가 3.0 미만인 유해업소는 노래연습장(2.29점), 무도학원(2.45점), 관광호텔(2.58점), 만화가게(2.59점), 미니게임기(2.66점), 호텔(2.77점), 당구장(2.81점), PC방(2.83점), 무도장(2.84점), 오락실(2.88점), 복합유통게임업(2.92점), 숙박업(2.95점), 봉안시설(2.99점)의 순이었다<Table 3>.

학생과 성인집단을 비교한 결과는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유해시설에 대해 학생집단보다 성인집단에서 모든 업소에 대하여 유해인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1$ )<Figure 1>. 학부모와 교사에서 신·변종업소가 각각

3.7점과 3.8점으로 타나나 가장 유해하다고 인식하였고, 다음으로 성인영화관, 전화방/화상대화방, 유흥/단란주점, 성인용품 등으로 유해인식이 높았다. 학교급별로 학생들의 유해인식은 중학생(2.86점), 초등학교(2.79점), 고등학교(2.61점)의 순으로 유해인식이 높았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초등학교가 알 수 있는 유해업소만을 대상으로 유해도를 파악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비교적 출입이 자유로운 PC방(3.07점)과 오락실(3.05)이 가장 유해하다고 인식하였다. 중학생(3.46점)과 고등학교(3.28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신·변종업소가 가장 유해하다고 인식하였다. 학생 전체에서 유해도가 가장 낮은 유해시설은 노래연습장(2.10점), 무도학원(2.31점)과 만화가게(2.40점)였다.

### 5. 유해인식도 비교

<Table 4>는 과거의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유해도를 평가하여 국민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유해업소를 다른 조사에서 모두 조사한 것이 아니므로 비교가 가능한 업소

의 유해도만을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성과 관련된 업종인 성인용 유해업소에 대한 유해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2000년, 2010년의 조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2010년에 가장 높은 유해도 평가를 받은 업소는 성인용품점이 3.75점이었고, 2013년에는 3.532점이었다. 두 번째로 높은 업소 역시 단란주점으로

2000년에는 3.67점, 2010년에는 3.38점, 2013년에는 3.47점이었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만화가게, 당구장 등과 같은 오락용 유해업소에 대한 유해인식이 2000년 조사보다 훨씬 높아졌고, 2010년의 조사보다는 약간 상승하거나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rend of level of harmful perception by shops

		2000 <sup>†</sup>	2010 <sup>‡</sup>	2013
Adult harmful shops	Adult goods shop	3.75	3.47	3.53
	Karaoke bar	3.67	3.38	3.47
	Dance hall/night club	3.34	2.80	2.84
	Horse race	3.11	3.19	3.24
	Phone sex room	3.22	3.30	3.37
	Hostess Bar	3.29	3.43	3.52
	Motel/Lodgement	3.36	2.93	2.95
Game harmful shops	Video room	2.94	2.93	3.00
	Billiard hall <sup>*</sup>	2.42	2.77	2.81
	Comic book room	2.22	2.58	2.59
	Mini game console	2.17	2.69	2.66
	Game room	2.06	2.87	2.88
	PC room	1.98	2.76	2.83
	Singing room	1.88	2.37	2.29

Note: <sup>†</sup>Lee, M & Sohn, A. (2000).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school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cleanup zone System*. Ewha Womens' University; <sup>‡</sup>KEDI. (2010)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school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cleanup zone System*.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 IV. 논의

본 연구는 전국의 초, 중, 고등학생,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정화구역에 대한 인지도와 유해업소별 유해도를 파악하여 향후 정화구역 제도를 개선할 때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정화구역 제도는 1967년에 학교보건법에서 도입된 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도구로서 활용되어 왔다(Sohn & Park, 2013). 정화구역의 설정목적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라고 하고 있으나 학교 자체의 보건위생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학생들에게 비행을 조장할 수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 즉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Kim, 2007). 이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화구역제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지역사회 주민 스스로가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정화구역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32.1%로 2010년의 한국교육개발원(2010)의 16.4%, 2000년의 10.5%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Lee & Sohn, 2000; KEDI, 2010). 집단별로 살펴보면 교사가 87.9%, 학부모는 40.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2010년의 조사에 비하여 크게 높아졌다. 학생의 경우는 초등학생이 27.3%, 중학생이 20.0%, 고등학생이 9.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학년이 낮을수록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은주(2007)의 연구는 ‘알고 있다’는 비율이 16.7%인 것에 비하면 본 연구의 인지율이 약간 높다(Kim, 2007). 정화구역제도의 인지도는 과거에 비하여 약간 높아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화구역 제도를 모르고 있었으며, 학부모의 경우도 이

를 알고 있는 비율이 절반도 안 되므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는 정화구역제도의 인지도를 과거와 비교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사와 동일한 척도인 “잘 알고 있다”, “들은 적이 있다”, “모른다”를 사용하였는데 “들은 적이 있다”의 경우 내용을 잘 모른다와 같은 의미일 수 있으므로 “알고 있다”와 “모른다”로 측정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도의 경우 학생들은 유해업소가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훨씬 높았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미친다는 응답이 높았다. 엄밀히 말하면 유해업소 존재한다고 해도 청소년이 유해업소가 갖고 있는 유해요인에 접촉하지 않는다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주변에 유해업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학년이 높을수록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 같다. 그러나 교사 학부모의 경우 상당수가 유해업소가 학교 주변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다. 우리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많은지에 대한 의견에 교사나 학부모보다 오히려 학생이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초등학생일수록 학교를 걸어서 다니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등하곳길에 학교 주변의 환경에 더 노출되므로 자신의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우리학교 주변의 환경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교사나 학부모보다는 학생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의 미성숙으로 인해 정서가 불안정하고, 호기심과 모방성의 경향이 높아서 성인보다 환경에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특히 학교 주변의 환경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조사되고 있다(Kim & Yoon, 2001; Kim & Cha, 2007). Lewin의 장이론(Field theory)에 의하면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는데 주변 환경이 중요하며, 결국 청소년이 속한 환경이 음주, 흡연, 폭력 등과 같은 일탈행동에 영향을 준다(Kim, 2007; Kim & Seong, 2006; Sohn & Ko, 2011). 그러므로 학교 근처에 유해업소가 많을 경우 학생들의 유해업소를 출입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될 수 있으며,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할 경우 유해업소와 그 업소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긍정적인 반응이 형성되어 학생들의 건전한 정서적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Kim & Yoon, 2001) 유

해업소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경우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에 유해업소가 많을수록 청소년이 일탈할 가능성이 높았다(Kim & Seong, 2006; Yoon, 2008). 주변에 유해업소가 많다고 해도 부모와 집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거나 부모가 자녀의 삶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환경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Kim & Sohn, 2014; Yoon, 2008). 그러나 가정환경이 취약한 학생일수록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의 영향력은 커서 청소년이 흡연, 음주나 폭력 등과 같은 일탈행동을 할 가능성은 크다(Sohn, Yang & Jung, 2010). 그러므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학교 주변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모든 국민이 인식하여 학교 주변에 유해한 환경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해시설과 관련된 사업주들이 환경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민의식이 고양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과거의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동일업종에 대한 유해도 평가를 하여 유해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추이를 보고자 하였다. 한국사회에서의 청소년의 유해시설은 크게 오락성 유해업소와 성인용 유해업소로 구분할 수 있다. 오락성 유해업소는 청소년들이 비교적 많이 이용하는 노래연습실, 비디오방, PC방, 만화가게, 당구장, 전자오락실, 노래방 등이다. 성인용 유해업소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나이트클럽), 전화방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성인용 유해업소는 성인을 대상으로 술, 노래, 춤의 제공 등 여흥접객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거나 실제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말한다(Kim & Sohn, 2014; Lee & Nam, 2006). 본 연구의 유해도 평가 결과 성인용 업소에 대한 유해인식이 다른 업종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으며, 이러한 결과는 2000년, 2010년의 조사결과와 같다. 숙박시설의 경우 2000년에는 유해도가 3.36점이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유해도가 2.95점으로 낮아졌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나 관광객을 수용하기에는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한 형편이다. 학교 주변이라고 하더라도 관광호텔이 유해한 부대시설이 없을 경우 건립을 허가하자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나 국민의 반대와 찬성 등의 논란이 계속되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Sohn & Park, 2013).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립을 반대하는 입장의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국내 관광호텔이 주요 선진국의 관광호텔과는 달리 이용자가 숙박 이



의의 목적으로 객실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대실(貸室) 영업 방식 때문이다. 규모가 크고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라고 하더라도 대실영업을 하는 한 본질적으로 모텔이나 여관과 같은 일반 숙박업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크고, 또한 관광호텔 주변에 호텔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유흥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본 연구에서도 숙박시설의 유해도가 과거에 비하여 많이 낮아졌으나 아직도 유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숙박업이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만화가게, 당구장 등에 대한 유해도 평가는 2000년 조사보다 높으며, 2010년의 조사와 비교해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용 유해업소는 규제가 비교적 약하고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므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마땅히 해소할 곳이 없으므로 게임용 유해업소를 많이 출입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게임용 유해업소 출입률은 82%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Sohn, 2014). 본 연구결과 학생들이 평가한 게임용 유해업소의 유해도는 노래연습장이 2.10점으로 가장 낮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2.76점으로 나타나 학생들조차도 이러한 시설이 약간 유해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하였다. 게임용 유해업소가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기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된다면 이러한 시설자체가 유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업소들의 유해도 점수가 높은 것은 업소의 본래의 목적만으로 영업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술이나 담배 등과 같은 유해약물이나 음란물과 같은 유해매체에 노출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학교 주변에 이러한 업소와 청소년의 흡연, 음주나 폭력 등과 같은 일탈행동을 상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Kim & Sohn, 2014; Kim & Yoon, 2001; Sohn, 2014). 청소년들에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태에서 게임용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최선의 정책은 아니다.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은 게임용 업소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무조건 출입을 못하게 하기 보다는 게임용 유해업소에서 건전하지 못하게 영업하는 것을 단속하고 관리하고,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성을 제거하여 보다 건전한 장소로의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ohn, 2014). 그렇게 된다면 추후 유해성 평가에서 유

해도가 낮게 평가된다면 정화구역에서 제한을 받는 금지시설에서도 제외될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보건법에서 입지적 제한을 받는 금지행위 및 시설의 유해성의 판단은 사회적·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한 상대적 개념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이다(Sohn & Park, 2013).

## V. 결론

현행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본 조사결과 정화구역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과거에 비하여 높아졌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다. 특히 이해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입지 위주의 교육을 강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소홀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등과 같은 법을 제정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과 유해업소 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에 기존의 유해업소 및 신종·변종 유해업소가 공공연하게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면 이러한 법적 장치나 정책이외에도 이해 당사자인 학생들 스스로가 유해환경이나 유해업소의 출입이 신체적, 정신적 심각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학교 주변에 유해환경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려면 이해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나 교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화구역제도를 설립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학교주변에 유해환경에 들어서지 않도록 주민들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정화구역제도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보건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유해시설에 대한 사회변화에 따른 유해인식 파악을 위해서는 동일한 조사 항목과 조사척도를 적용한 정기적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정화구역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보건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시설 이외에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도 유해도가 주기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 References

- Kim, E. J. (2007). A survey of recognition of school environment hygiene purification zone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0(2), 69-80.
- Kim, J., & Sohn, A. (2014). Smoking and alcohol drinking related to experience of harmful shops among Korean adolescents. *Osong Public Health Res Perspect*, 5(3), 138-147.
- Kim, J. O., & Seong, Y. E. (2006). A study on the influence between noxious environment and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Criminal psychology*, 2(2), 203-225.
- Kim, M. C., & Yoon, O. K. (2001). Visit to entertainment shops and delinquent experience of youths in Korea. *Journal of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8(1), 99-116.
- Kim, Y. I., & Cha, J. I. (2007). Youth's contacting and spreading channels of harmful facilities' risk facto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4(2), 187-211.
- Lea, E. K., Jee, S. H., Lee, J. E., Choi, S. M., & Jung, C. S. (2003).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youth delinquency risk-factor and protective-factor scale.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1(2), 57-70.
- Lee, E. H., & Nam, S. J. (2006). The self concept of adolescent consumers and the evaluation and experience of adolescent entry into harmful plac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4(2), 25-36.
- Sohn, A. (2010). The relationship with tobacco use, alcohol consumption and sexual behavior among adolescents in Seoul city.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11(1), 77-87.
- Sohn, A. (2014). Characterizing patterns of experience of harmful shops among adolescents using decision tree model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31(3), 15-26.
- Sohn, A., & Ko, S. D. (2011). Drinking behavior and factors that affects problem drinking among Korean female high-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12(2), 155-162.
- Sohn, A., & Park, E. J. (2013). Future direction of school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cleanup zone system. [Future Direction of School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Cleanup Zone System]. *Health and Social Science*, 33, 221-242.
- Sohn, A., Yang, M. Y., & Jung, M. K. (2010). The family affluence scale and drinking behavior among high school Korean students.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13(2), 131-146.
- Yoon, O. K. (2008). A study on the causes of juvenile delinquency: Comparing relative effects of the individual, family, school, community contexts. *Correction Review*, 38, 107-138.
- Lee, M., & Sohn, A. (2000).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school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cleanup zone System*. Ewha Womens' University.
- KEDI. (2010)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school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cleanup zone System*.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